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24 선고 2019가합540942(본소), 2019가합585884(반소) 판결
[매매대금 · 용역대금 청구의 소]

전 문

원고(반소피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

담당변호사 서민석, 남민영, 정지현

피고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조건주, 정현기

피고(반소원고)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공

담당변호사 이명의, 최지혜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은혜

변론 종결2020. 9. 17.

판결 선고2020. 12. 24.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에 대한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의 원고(반소원고)에 대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본소: 주위적으로,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예비적으로, 피고 B 주식회사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주식회사 C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C에 92,551,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원고'라 한다)는 석산개발, 토석채취, 골재판매 및 운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토사석 및 골재채취업, 골재채취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며,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는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에 관한 기획, 타당성조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나. 자산양수도계약 체결의 경과

1) 원고는 2010년 9월경 피고 B과 천안시 동남구 E 임야 149,455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이 사건 토지 중 68,273m²(이하 '이 사건 채굴허가토지'라 한다)에 대한 토석채취허가 및 이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양도대금 7,500,000,000원(토석채취허가권 양도 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340,000,000원 별도)으로 정하여 양도하는 내용의 자산양수도계약을 위한 가계약을 체결하고, 2010. 9. 7. 피고 B으로부터 계약금 5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2) 원고는 2010. 9. 13. 피고 B와 위 가계약에 따른 본계약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자산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자산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으로부터, 2010. 9. 13. 2,640,000,000원, 2010. 12. 31. 3,490,000,000원, 2011. 12. 29. 130,000,000원, 그 무렵 80,000,000원 합계 6,840,000,000원(= 계약금 500,000,000원 + 2,640,000,000원 + 3,490,000,000원 + 130,000,000원 + 8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자산양수도계약

제1조 자산양수도 목적물

본 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 B에게 양도하는 자산양수도 목적물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별첨 1에 의한다.

(1)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2) 이 사건 채굴허가토지에 관하여 원고가 2007. 12. 28. 천안시로부터 득한 토석채취허가(이하 "토석채취허가"라 한다) 및 이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

제3조 양수도 대금 및 지급시기

1. 본 계약에 따른 양수도 대금은 본건 토지 대금 4,100,000,000원과 토석채취 허가권 양도 대금 3,400,000,000원(부가세 별도), 합계 총 7,500,000,000원(토석채취허가권에 대한 부가세 별도)으로 하되,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단 피고 B은 본계약서에서 정한 원고의 의무가 모두 이행될때까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2. 계약금은 3,000,000,000원으로, 별첨 2와 같이 배분하여 본 계약 체결시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단 피고 B이 2010. 9. 7. 원고에게 지급한 자산양수도 가계약에 따른 계약금 500,000,000원은 본 계약상의 계약금의 일부로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자동으로 전환·충당된다.
3. 잔금은 4,500,000,000원으로, 별첨 2와 같이 배분하여 다음과 같이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 (1) 잔금 중 3,400,000,000원은 피고 B이 제5조의 의무사항 이행을 완료한 후 7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 (2) 잔금 중 1,100,000,000원은 본건 토지 중 피고 B이 천안시로부터 토석채취허가를 득하지 못한 81,182㎡ 부분(이하 '미허가 토지'라 함)에 대하여, 피고 B이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이하

'토석채취 허가 취득 기간'이라 함)에 피고 B 명의로 토석채취 허가를 득하였을 때에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단, 미허가 토지에 대한 피고 B의 토석채취 허가 취득기간은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나, 피고 B이 그 연장되는 기한의 종기를 정하는 것으로 하고, 원고는 피고 B이 미허가 토지에 대한 토석채취 허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를 다 하여야 한다.

(3) 피고 B이 위 제(2)호에 따라 토석채취 허가 취득 기간 내에 토석채취 허가를 득하지 못하였을 경우, 피고 B은 잔금 미지급분 11억 원 중 1억 원만 원고에게 지급하며, 원고는 잔금 미지급분 10억 원을 포기한다. 이 경우 피고 B이 원고에게 지급한 위 1억 원으로 본 계약상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양수도대금 지급의무는 모두 이행된 것으로 한다.

제6조 소유권의 이전

1. 원고는 제3조 제3항 제(1)호의 잔금 지급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제2항에 따른 법적 장애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피고 B에 이전하기로 하며, 이를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피고 B에 교부하여야 한다.

2. 원고는 피고 B의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이 사건 토지상에 설정된 근저당, 지상권 등의 제한물권, 제3자의 사용권, 가등기, 가압류, 압류, 가처분 기타 이 사건 토지의 소유, 사용, 처분을 제한할 수 있는 일체의 법적 장애나 부담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당사자들의 약정사항

2. 원고는 제6조에 따라 피고 B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때까지, 그의 책임과 비용으로 피고 B의 이 사건 토지 상의 석산개발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원문제 등을 해결한다.

3. 원고는 본 계약 종료 이후라도 피고 B이 석산개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진입 도로 확보, 확장, 포장 및 점용허가 취득 등과 관련한 피고 B의 요청에 적극 협력하여 피고 B이 원활하게 석산개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별첨1 자산양수도 리스트

토지	천안시 동남구 E	149,455	4,100,000,000	부가가치세 별도
토석채취 허가권	·대상지역: 천안시 동남구 E-허가면적 합계: 68,273m ² ·종류 및 수량: 편마암 등 1,407,000m ² ·허가기간: 2008년 1월 ~ 2018. 4. 30.		3,400,000,000	

토지	천안시 동남구 E	149,455	4,100,000,000	부가가치세 별도
합계		7,500,000,000		

3)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토석채취허가권 등의 권리를 양수받아 토석을 채취하는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원고와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와 그 인근의 원고 소유 토지 등을 공동사업부지로 하여 채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작하였고, 2011. 11. 15. 이 사건 사업의 공동사업 대표자를 원고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 대표자 선임계를 작성하였다.

다. 계약변경 및 확약서 작성

원고는 2011. 12. 27. 피고 B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계약변경 및 확약(이하 '이 사건 계약변경 및 확약'이라 한다)을 하였다.

1. 원고는 피고 B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약한다.

가. 피고 B과 원고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관할 주무관청에 제출하는 원고를 대표자로 하는 신고행위는 산지관리법상 채석단지지정과 관련한 형식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함에 한정하고, 피고 B의 기허가면적 68,273m²를 포함한 156,769m²의 채석사업에 어떠한 권한을 설정하거나 본 사업에 대하여 실질적 지배권 등 여하한 권한을 설정하는 것이 아님을 확인한다.

나. 원고는 피고 B 소유 토지의 채석단지 지정 및 채석신고 수리와 관련하여 주무관청이 요구하는 동의서 등을 적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채석신고 수리 후 피고 B의 채석행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라. 원고와 피고 B이 2010. 9. 13. 기체결한 자산양수도계약서 제3조 제3항 제3호의 잔금 1,100,000,000원 중 100,000,000원은 2011. 12. 31.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1,000,000,000원은 E 156,769m² 전부1)에 대한 채석단지 지정고시 및 채석 신고수리가 완료된 이후에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지급받는 것을 동의한다.

마. 자산양수도계약서 제3조 제3항 제2호에 기재된 "토석채취 허가를 득한 때"라 함은 E

156,769m² 전부에 대한 채석단지 지정고시 및 채석 신고수리가 완료된 것을 의미한다.

2. 원고와 피고 B은 본 사업이 완료된 후 각자의 채석신고를 보장하며 만일 상기 1의 사항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이에 대해 손해액 전체를 배상하기로 한다.

라. 기술용역계약의 체결

1) 원고와 피고 B은 2011. 7. 27. 피고 C와 사업규모 252,397m²(피고 B: 149,455m², 원고: 102,942m²), 계약금액 360,000,000원(피고 B: 213,000,000원, 원고: 146,8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이 사건 사업을 위한 항공측량, 채석경제성평가, 산림조사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문화재지표조사, 채석단지지정 용역을 수행하도록 하는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2. 15. 위 기술용역계약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일부 변경하는 계약변경합의를 하였다.

계약변경합의

용역명: 천안시 동남구 F리 채석단지를 위한 항공측량, 채석경제성평가, 산림조사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문화재지표조사, 채석단지지정 용역

1. 계약변경사항

나. 계약금액 변경

- 당초 - 36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피고 B: 21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원고: 146,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변경 - 39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증: 35,200,000원)
- 피고 B: 241,3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증: 28,160,000원)
- 원고: 153,8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증: 7,040,000원)

2) 원고는 2011. 7. 27. 피고 C와 계약금액을 81,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되, 계약금 24,480,000원, 준공금 57,120,000원을 정하여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채석단지 지정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수행하도록 하는 기술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기술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피고 C에 계약금 24,48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기술용역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편 피고 B은 2011. 11. 3. 피고 C와 계약금액을 118,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이 사건 사업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수행하도록 하는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조 (기본원칙)

원고와 피고 C는 이 계약에 관하여 상호협력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과업의 범위)

1. 피고 C가 수행할 과업의 범위는 천안시 동남구 F리 채석단지 환경영향평가용역이며, 원고의 방침이나 지시에 따라 약정된 기간 내에 계약금액 범위 안에서 능률적이고 성실하게 작업을 완료해야 한다.
2. 피고 C는 원고가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사소한 변경이나 경미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때에는 원고와 피고 C의 협의 하에 결정한다.

제7조(대금지급)

대금지급은 피고 C의 청구에 따라 원고는 피고 C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계약금	업무 용역 계약시	계약후 10일 이내	30%	24,480,000원
준공금	협의완료시	완료후 10일 이내	70%	57,120,000원
총계	100%	81,600,000원		

제8조(용역의 완료 및 검사)

1. 피고 C는 용역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원고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용역성과물을 원고에게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계약완료 이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2. 피고 C는 용역 완료 후 원고와 협의하여 필요한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의 해지 및 해약)

1. 원고는 피고 C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통지로서 본 계약을 해지 내지 해약할 수 있다.

-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기일까지 용역을 착수하지 못할 때
- ② 준공기일까지 과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준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 ③ 과업수행에 있어 중대하고도 명백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피고 C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 또는 해약될 경우 피고 C는 계약해지, 해약으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을 지며, 이와 함께 피고 C가 선급금 및 기성금을 지급 받은 때에는 수령한 용역대가금액 전액을 10일 이내에 전액 현금으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3) 원고는 2013. 2. 15. 피고 C와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수행할 원고의 면적이 증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계약금액을 117,031,000원으로 증액하는 계약변경합의(이하 '2013. 2. 15.자 계약변경합의'라 한다)를 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계약변경사항

가. 면적 변경

252,397m ² (원고: 102,942m ² , 피고 B: 149,455m ²)	348,756m ² (원고: 199,301m ² , 피고 B: 149,455m ²)
--	--

나. 계약금액 변경

- 당초 - 2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피고 B: 118,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원고: 81,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변경 - 262,0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증: 62,050,000원)
- 피고 B: 145,01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증: 26,619,000원)
- 원고: 117,03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증: 35,431,000원)

다. 지급방법

· 본 용역에 대한 지급방법은 기존 계약과 동일하다.

2. 금회 변경되는 증가용역금액(62,050,000원) 중 피고 B의 지분금액(26,619,000원)까지 원고가 지급을 보증한다.

마. 환경영향평가의 신청과 취하

1) 피고 C는 원고와 피고 B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원고를 대행하여 2012. 2. 24.경 산림청장에게 이 사건 사업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계획서[사업규모 538,626m², 그중 원고 381,857m², 피고 B 156,769m²(기허가 면적 68,273m² 포함)]와 위 나. 3)항의 공동사업 대표자 선임계를 제출하였고, 2012. 6. 29. 산림청장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심의결과를 통보받았다.

○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의 적정성

- 사업예정지 중 이 사건 채굴허가토지(68,274m², 천안시 허가)는 2007년 7월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사전환경성검토 당시 부동의 협의된 사업부지임

- 채석단지의 지정으로 사업규모가 확대될 경우 동·식물상의 자연생태환경, 소음·진동, 경관의 생활환경 등에 위해가 가중될 것으로 판단됨

- 위 사유로 동 채석단지의 지정은 재검토가 바람직함

(중략)

- 사업규모 축소

2) 피고 C는 2013. 7. 2. 원고를 대행하여 산림청장에게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승인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이 사건 사업의 사업규모를 270,818m²[= 이 사건 토지의 면적 149,455m²(피고 B 소유) + 천안시 동남구 G의 면적 102,942m²(이하 위 G 토지를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 + H 및 I의 면적 중 12,011m²(국가 소유) + J의 면적 231m²(K 소유) + L의 면적 6,179m²(원고 대표이사 M 소유)]로 축소하고 별지1 토지이용계획도를 첨부하여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이하 '이 사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3) 피고 B은 이 사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제출된 이후 2014. 4. 29. 천안시 동남구 N 임야 74,213m², ○ 임야 3,539m²(이하 '이 사건 추가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같은 달 30일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이어서 피고 C는 2015년 4월경 이 사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사업규모에서 H 및 I, J, L를 제외하고, 이 사건 추가토지를 추가하여 사업규모를 $330,149\text{m}^2$ [= 이 사건 토지의 면적 $149,455\text{m}^2$ (피고 B 소유) + 원고 소유 토지의 면적 $102,972\text{m}^2$ + N의 면적 $74,213\text{m}^2$ (피고 B 소유) + P의 면적 $3,539\text{m}^2$ (피고 B 소유)]로 확대하고 별지2 토지이용계획도를 첨부하여 환경영향평가서(본안, 이하 '이 사건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피고 C는 2015. 4. 7. 원고를 대행하여 산림청장에게 이 사건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제출하였다.

5) 산림청장은 2015. 6. 1.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관할청인 금강유역환경청장에, 이 사건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첨부한 '채석단지 지정 목적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검토 후 회신을 요구하였다. 이에 금강유역환경청은 2015. 7. 7.경 이 사건 사업 부지를 방문하고, 위 평가서본안을 검토한 결과 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 후 집단 민원 발생, ② 경사도 및 보산원 취수장 문제, ③ 석면 평가 신뢰성 부족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업에 관한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였다.

6) 피고 C는 2015. 7. 21.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하였던 이 사건 환경영향평가서 본안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 진행을 취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22,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호증의 3, 을가 제3, 4, 9호증, 을나 제1, 2, 5,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산림청장, 금강유역환경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1) 민법 제150조 제1항에 따르면 "조건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 전부에 대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득한다는 정지조건이 성취되면 이 사건

자산양수도계약과 이 사건 계약변경 및 확약에 따라 원고에게 잔금 1,00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위와 같은 정지조건의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피고 B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신의성실에 반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못하게 하여 위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조건의 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

(가) 피고 C는 2015. 4. 7. 원고 모르게 피고 B의 부탁으로 이 사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이 사건 토지를 추가하여 이 사건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으로 사업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지연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지 못한 원고는 피고들이 민원 등 몇 가지 문제가 있으니 환경영향평가를 취하하고 다시 신청하자고 제안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철회하였을 뿐이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의 사업부지를 변경하려고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였고, 이 사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제출된 이후 사업규모 확대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피고 B은 2014. 4. 29.경 원고 몰래 Q 주식회사(이하 'Q'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추가토지를 매수하여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였다. 또한 피고 C는 2014. 11. 17.경 원고에게 변경계약 합의서를 보내면서 사업규모 확대를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응하지 않자 이 사건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원고에게 제공하지 않았고, 이 사건 사업부지를 확장하여 이 사건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제출한다는 사실을 미리 고지하지도 않았다.

(다) 원고가 피고들의 권유를 받고 환경영향평가 진행을 취하한 후 피고 B은 갑자기 이 사건 도로의 북쪽에 위치한 도로(이하 '이 사건 북쪽도로'라 한다)를 진출입도로로 포함하여 사업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북쪽도로는 애초부터 도로로서 사용할 수 없었고, 이 사건 토지의 남쪽으로 Q이 설치한 임도(이하 '이 사건 남쪽도로'라 한다)가 존재하고 있었으며, 원고는 당시 피고 B이 이 사건 남쪽도로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므로, 이 사건 북쪽도로를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진출입도로에 포함시킬 이유가 없었다. 이에 환경영향평가에서 진출입도로의 위치는 중요한 것이 아닌데도, 피고 B은 이 사건 북쪽도로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문제 삼으며 이 사건 사업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C는 진출입도로 포함 여부에 대한 입장 차이로 R협의회 심의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고 하였다. 결국 피고 B은 평가항목도 아닌 진입도로 문제를 들먹이면서 재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지 아니하여, 2018. 4. 30.

기준에 받은 68,723m²에 관한 토석채취허가 기간이 만료되었다.

(2) 따라서 피고 B은 이 사건 자산양수도계약과 이 사건 계약변경 및 확약에 따라 잔금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

(1) 이 사건 자산양수도계약 제3조 제3항 제(2)호는 "원고는 피고 B이 미허가 토지에 대한 토석채취허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를 다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 B 역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석채취허가를 받는 것에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은 당연하다. 그런데 피고 B은 원고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위 협력의무에 위반하여 이 사건 사업의 사업규모를 확대한 이 사건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금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하여 스스로 토석채취허가를 받기 어렵게 만들었다. 또한 피고 B이 원고에게 사업규모가 늘어났다는 사실을 숨기고 원고가 환경영향평가 신청 취하에 동의하도록 한 이후에는 이 사건 북쪽도로를 문제삼아 트집을 잡으며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었다.

(2) 피고 C는 이 사건 기술용역계약 제8조에 따라 이 사건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제출할 때에는 이를 원고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용역성과물을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를 신청하기에 앞서 중요한 사정변경이 있다면 이를 원고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 C는 원고를 배제한 채 피고 B과 협의하여 이 사건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작성 업무를 진행하였고, 이 사건 사업규모를 확대하여 이 사건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제출한다는 사실을 원고에게 전혀 알리지 않은 채 이 사건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원고에게 제출하여 검사도 받지 아니한 채 원고의 날인을 받았다.

(3)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한 후 피고 C의 권유에 따라 사업부지의 석면 함유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다른 업체와 별도의 용역계약을 통해, 석면이 검출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2014년 3월자 자연발생석면조사보고서를 받고 이를 피고 C에 교부하였다. 그런데 피고 C는 위 보고서를 산림청, 금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하지 않았고, 이후에 작성된 2015년 1월자 자연발생석면보고서 역시 어디에도 제출하지 않았음은 물론 미제출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의 석면 검출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점을 알지 못한 채

'환경영향평가를 취하하고 미비사항을 보완한 뒤 다시 신청하자'라는 피고들의 권유를 받고 이를 수락한 것이다. 이처럼 석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채석단지 지정은 물론이고 환경영향평가조차 통과할 수 없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원고와 피고 B에게 별도의 조사용역을 요청하기까지 하였던 피고 C가 원고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위 석면조사 용역보고서를 관할청에 제출하지 아니한 것은 이 사건 기술용역계약 제2조 제1항,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

(4)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이 사건 자산양수도계약, 계약변경 및 확약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 1,0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는 피고 B과 공동하여 이 사건 기술용역계약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 1,0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 원고와 피고 B은 공동하여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고, 이 사건 추가토지를 이 사건 사업의 사업부지로 추가하기로 함께 논의하여 이 사건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제출하게 된 것이다. 원래는 원고가 이 사건 추가토지를 매수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에 포함시킬 예정이었는데, 이 사건 추가토지의 소유자인 Q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고 B이 이 사건 추가토지를 매수하기로 약정하게 되었을 뿐이다. 피고 B이 원고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규모를 확대하여 이 사건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원고와 피고 B이 2015. 7. 21. 이 사건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취하한 이유는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사업시행 시 석면 검출, 산지 훼손, 상수원보호구역 등 사유로 '사업시행은 바람직하지 아니함'이라는 검토의견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사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북쪽도로를 진입도로로 사용하는 문제가 환경영향평가와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 C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사업부지 확대를 자발적으로 주도 및 승인하였고, 피고 C는 원고의 승인에 따라 사업규모를 확대한 이 사건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원고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관할 행정청에 제출하였으며, 석면에 관한 조사보고서 내용도 관할청에 알리는 등 이 사건 기술용역계약을 위반하지 아니하였다.

설사 원고가 사업규모의 확대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규모의 확대와 원고가 이 사건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른 잔금 1,00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데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나.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 B이 원고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채석단지 지정을 위하여 피고 C로 하여금 이 사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보다 사업부지가 확대된 이 사건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작성하도록 하고, 위와 같이 작성된 이 사건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관할 행정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으로 환경영향평가 절차의 진행을 방해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못하도록 하였는지 여부이다.

2) 피고 B이 원고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채석단지 지정을 위하여 피고 C로 하여금 이 사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보다 사업부지가 확대된 이 사건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작성하도록 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기초 사실과 을나 제3, 4,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산림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이 원고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피고 C로 하여금 이 사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사업부지에 이 사건 추가토지를 추가하여 이 사건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제출하게 함으로써 신의성실에 반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못하도록 하여 이 사건 자산양수도계약과 이 사건 계약변경 및 확약에 따라 원고가 잔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전제가 다른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 원고와 피고 B은 2011. 7. 27. 피고 C와 사이에 사업규모를 $252,397\text{m}^2$ [= 이 사건 토지(피고 B 소유)의 면적 $149,455\text{m}^2$ + 원고 소유 토지의 면적 $102,942\text{m}^2$]을 기준으로 이 사건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당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원고 소유 토지를 주된 사업부지로 하여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나) 피고 C는 2012년 7월경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당초 구역경계가 부정형으로 채석단지 지정에 어려움이 있어 구역경계 정형화에 따라 2개 필지를 추가(이 사건 추가토지)'하여야 하는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사업면적이 당초 $252,397\text{m}^2$ 에 이 사건 추가토지 면적의 합계 $77,752\text{m}^2$ (= N 토지 $74,213\text{m}^2$ + O 토지 $3,539\text{m}^2$)를 원고의 사업부지로 더하여 합계 $330,149\text{m}^2$ 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2012. 7. 18. 원고와 피고 B에 회의자료로 제출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들은 2013. 1. 29. 위와 같이 사업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이 사건 기술용역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재계약관련 회의를 진행하였는데, 위 회의에서 피고 C는 원고와 피고 B에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채석단지 지정과 관련하여 '이 사건 토지와 원고 소유 토지를 연결하는 부분의 폭이 좁아 안전성 문제가 있고, 단지형태의 부정형으로 2개의 토석채취장을 붙여놓은듯한 형태로 채석단지로 보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위 회의에서 원고의 대표이사 M은 '단지의 부정형에 대한 문제제기로 추가 필지(이 사건 추가토지)가 필요할 시에는 이 사건 추가토지를 확보하여 채석단지 형태가 정형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B는 2013. 2. 15. 피고 C와 위와 같은 회의결과를 반영하여 원고의 사업면적이 증가하는 것을 전제로 용역대금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기술용역계약을 변경하여 2013. 2. 15.자 계약변경합의를 하였다.

마) 그런데 원고가 Q으로부터 이 사건 추가토지를 매수하지 못하여 피고 C는 2013. 7. 2. 일단 이 사건 사업의 사업규모를 이 사건 추가토지를 제외한 270,818m²로 하고, 별지1 토지이용계획도를 첨부하여 이 사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하였다.

바) 그러던 중 피고 B이 Q, S, T과 협의를 하여 2014. 4. 30. 이 사건 추가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었다. 이어서 원고와 피고들은 2014. 5. 15. 원고의 대표이사 M이 참석한 회의에서 사업규모 변경과 관련한 고려사항과 비용문제 등에 관하여 논의를 하였고, 2015. 2. 13. 진행한 회의에서 이 사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사업면적 270,818m²에서 구거(천안시 동남구 H 및 I의 면적 중 12,011m²)와 답(J의 면적 231m²)을 제외하고 이 사건 추가토지를 추가하는 것으로 이 사건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작성할지, 위 구거와 답을 제외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추가토지를 추가하는 것으로 이 사건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작성할지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하기로 하였다.

사) 피고 C는 2015년 4월경 이 사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사업면적에서 위 구거와 답을 제외하고 이 사건 추가토지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별지2 토지이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작성하고, 같은 달 2일경 이를 원고에게 제출하여 검토를 요구한 뒤, 같은 달 7일 산림청장에게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채석단지 지정을 위한 이 사건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첨부하여

원고로부터 날인을 받아 공문(을가 제9호증)을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형식적 절차에 협조하였을 뿐 그 내용을 알지 못한 채 위 공문에 원고 대표이사 직인을 찍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 B와 이 사건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한데다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석면조사용역을 맡기는 등 원고가 사업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정도와 내용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3)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이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채석단지 지정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신청을 함에 있어 이 사건 북쪽도로는 진출입도로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진출입도로의 위치는 중요한 것이 아닌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북쪽도로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문제 삼으며 이 사건 사업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진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가 제3, 4, 6 내지 8호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북쪽도로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진입하기 위한 진입도로로 사용되었고,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채석단지 지정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에 진입도로의 확보도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할 것인데도, 원고와 M이 피고 B의 이 사건 북쪽도로에 관한 통행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가) 원고와 피고 B은 2013. 7. 2. 작성된 이 사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따라 진입도로 계획으로, 사업지구에서 생산되는 채석의 운반차량은 사업지구 동측의 기존 진입도로를 이용하여 시도U를 거쳐 지방도V를 이용할 계획과 이 사건 사업부지의 진입도로가 현재 미포장 상태이므로, 진입도로를 폭원 10m(1차로), 연장 1.2km로 하여 사전 포장할 계획으로 먼지의 비산을 최대한 억제토록 할 계획을 세웠다.

나) 한편 이 사건 토지는 공로로부터 약 1.2km 거리에 있는데, 그 사이에 흐르는 하천을 중심으로 남쪽으로 Q이 설치한 이 사건 남쪽도로가, 북쪽으로는 마을주민들이 일상적인 통행에 사용해 왔던 이 사건 북쪽도로가 설치되어 있었다.

다) 피고 B은 2011년 7월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골재생산을 시작하였다가 2013년 3월경 농지인 L 토지를 야적장 부지로 불법전용한 사실이 천안시에 적발되면서 골재생산을 중단하였다. 피고 B은 2013. 5. 16.경 천안시로부터 위 L 토지에 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2015. 1. 19. 다시 이

사건 토지에서 골재생산을 시작하였고, 2016. 1. 23.경까지 골재를 생산하였다.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에서 골재를 생산할 당시 이 사건 남쪽도로는 골재운반용 덤프트럭의 진입도로, 이 사건 북쪽도로는 진출도로 각각 사용하였다.

라) 원고의 대표이사 M은 2015. 1. 29. 천안시 동남구 W 임야 39,700㎡(이하 '이 사건 경락토지'라고 한다)를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였다. 이 사건 경락토지 중 중 별지3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가) 부분 177㎡와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679㎡은 이 사건 북쪽도로 상에 위치하고 있다[이하 위 (가), (나) 부분을 '이 사건 통행로 부분'이라고 한다].

마) M은 2015. 7. 5. 이 사건 통행로 부분에 약 5m×8m×1.5m 크기의 구덩이를 파고, 그 구덩이 옆에 굴삭기 1대를 세워놓았다. 이후 위 구덩이는 메워졌지만, M은 2015. 7. 7. 위 굴삭기 옆에 또 다른 굴삭기 1대를 세워놓았고, 이로 인해 이 사건 통행로 부분의 폭이 좁아져 승용차는 이 사건 통행로 부분을 운행할 수 있으나, 이 사건 토지에서 공로로 나오는 골재운반용 덤프트럭은 위 통행로 부분을 운행할 수 없게 만들었다(이하 M이 위와 같이 구덩이를 파고 굴삭기를 세워놓음으로써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행위를 '이 사건 통행방해행위'라고 한다).

바) M은 2016. 5.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고정1073호로 이 사건 통행방해행위가 일반교통방해(형법 제185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았고, M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대전지방법원 2016노1428호, 대법원 2017도3528호).

사) M은 2015년 12월경 이 사건 통행방해행위에 사용한 굴삭기 2대 중 1대를 이 사건 통행로 부분 밖으로 옮겼고, 2016. 5. 2. 나머지 1대도 이 사건 통행로 부분 밖으로 옮겼다.

아) 피고 B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가합100242호로 원고와 M을 상대로 이 사건 통행로 부분 등에 대한 통행방해금지청구와 영업손실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2. 10. "원고와 M은 피고 B이 이 사건 통행로 부분을 통행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일부 인용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 M과 피고 B이 모두 항소하였으나, 대전고등법원은 2018. 8. 29. 원고, M과 피고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다만

청구취지 정정에 따라 이 사건 통행로 부분의 표시가 일부 정정되었다). 원고와 M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8. 12. 27. 위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4)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B이 이 사건 자산양수도계약 제3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석채취허가를 받는 것에 협력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에서 살펴본 바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이 이 사건 자산양수도계약 제3조 제3항 제(2)호에 위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석채취허가를 받는 것에 협력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C가 이 사건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제출하면서 원고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업의 사업규모를 증가시켰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들이 합의하여 이 사건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작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나아가 피고 C가 원고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2부의 석면조사 용역보고서를 관할청에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이 사건 기술용역계약 제2조 제1항,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22, 33, 34호증, 을나 제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금강유역환경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①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이 사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서 석명이 미량 검출되었다는 점이 언급되자, 금강유역환경청과 충청남도 환경관리과는 자연발생석면의 함유 여부를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사실, ②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대표로서 2013. 12. 27. X 주식회사(이하 'X'이라 한다)와 계약기간을 2014. 1. 1.부터 2014. 3. 31.까지로 하여 석면실태조사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 ③ X은 2014년 3월경 2014. 1. 15.부터 같은 해 3. 10.까지 지표지질조사 및 시추코어 관찰, 실내분석 등을 조사한 결과 이

사건 사업부지에서 석면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 ④ X은 2015년 1월경 2014. 12. 10.부터 2015. 1. 12.까지 지표지질조사 및 시추코어 관찰, 실내분석 등을 추가조사한 결과 이 사건 사업부지에서 석면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 ⑤ 그런데 피고 C는 2014년 3월경 및 2015년 1월경 작성된 위 자연발생석면조사보고서를 원고로부터 교부받았으나, 산림청과 금강유역환경청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 C에게 위 석면실태조사보고서를 산림청 등 관할 행정청에 제출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데다가, 갑 제2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산림청장, 금강유역환경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C가 2부의 석면조사 용역보고서를 관할청에 제출하지 아니한 것만으로 이 사건 기술용역계약 제2조 제1항,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본소청구는 이유 없다.

① 피고 C는 원고가 주장하는 석면실태조사보고서의 내용인 사업지 내 석면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결과를 이 사건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반영하여 제출하였다.

② 금강유역환경청은 이 사건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원고 측도 참석한 개별 면담에서, 피고 C로부터 X이 작성한 석면조사보고서의 내용을 구두로 보고받았으나, 석면 평가의 신뢰성이 부족한 점을 들어 부정적 입장을 표시하였다.

③ 이에 피고 C는 원고 및 피고 B에 환경영향평가서를 취하하고 재신청하자는 의견을 내었는데, 피고 B의 당시 대표이사 Y은 2015. 7. 21. 원고 대표이사인 M에게 "C의 권고대로 석산단지관련 부동의 받기 보다 자진취하후 석면과 민원 등 몇가지 사안 처리하여 재신청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되는바, M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C측 얘기는 오늘까지 금강유역청에 회신해야 한다고 하니 오전 중에 C에 지침을 주었으면 합니다."라고 적은 문자메시지를 보내, 환경영향평가에 석면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음을 알렸다.

④ 원고는 위 문자메시지를 받고 석면 문제에 관한 의구심을 표시하는 등 별다른 반응 없이 2015. 7. 21. 피고 C에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관련한 환경영향평가 진행을 취하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 C는 같은 날 산림청에 환경영향평가 진행을 취하하였다.

⑤ 이에 삼림청장은 2015. 7. 28. 금강유역환경청장에 위 취하 사실을 전하며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철회요청하였다.

3. 반소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 1) 피고 C의 주장 원고는 피고 C에 2013. 2. 15.자 계약변경합의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용역대금 92,551,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기술용역변경계약은 계약면적 추가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합의인데, 계약면적이 추가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였고, 민법 제147조 제1항에 따라 애초에 합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설령 위 합의가 정지조건부 합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 합의는 2014년 4월경 합의해지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기술용역변경계약에 따른 잔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위 기초 사실 및 위 [인정 근거]에서 든 증거들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 C는 원고의 사업부지 면적이 증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2013. 2. 15.자 계약변경합의를 체결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사업부지 면적이 증가하지 아니함으로써 2013. 2. 15.자 계약변경합의에서 정한 조건이 성취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2013. 2. 15.자 계약변경합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피고 C의 반소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피고 C에 대한 본소청구와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윤도근

판사이창원

판사방혜미

별지

같이 기재되었다.